요양보호사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콘텐츠는 요양보호사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어떤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요양보호사로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내용을 안내합니다. 또한, 최근 새롭게 도입된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에 관한 내용도 함께 제공합니다.

요양보호사 1
1. 요양보호사 제도 알아보기 4
1.1. 요양보호사 제도의 이해 4
1.1.1. 요양보호사 자격 요건 4
1.1.2.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6
2.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및 활동 11
2.1.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절차 11
2.1.1.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의 수료 11
2.1.2.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의 응시 19
2.1.3. 자격증 발급 및 취소 21
2.2. 자격 취득 후 활동 23
2.2.1. 요양보호사로 일하기 23
2.2.2. 가족인 요양보호사 27
2.2.3. 자격 취득 후 교육의 이수 29
3. 외국인 요양보호사 제도 35
3.1. 외국인 요양보호사 제도 알아보기 35
3.1.1. 외국인의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35

1. 요양보호사 제도 알아보기

1.1. 요양보호사 제도의 이해

1.1.1. 요양보호사 자격 요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노인 등의 신체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란?

▪ “요양보호사”란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을 말합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3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1 참조).

※ 노인성 질병의 종류

구분	질병명	질병코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0
	혈관성 치매	F01
	달리 분류된 그 밖의 질환에서의 치매	F02
	상세불명의 치매	F03
	알츠하이머병	G30
	지주막하출혈	I60
	뇌내출혈	I61
	그 밖의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I62
	뇌경색증	I63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I64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그 밖의 뇌혈관 질환	I67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I68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I69
	파킨슨병	G20
	이차성 파킨슨증	G2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G22
	기저핵의 그 밖의 퇴행성 질환	G23
	중풍후유증	U23.4
	진전(震顫)	R25.1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G1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계통성 위축	G13
	다발경화증	G35

요양보호사 결격사유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3 및 『2026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6면 참조).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민법」 제9조)]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도 포함함)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7.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Q.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파악되어 관리되고 있나요?**
>
> A. 네, 각각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다음의 정보를 통해 파악하고 있습니다.
>
> · 위 1. 및 2의 결격사유: 시험 합격 후 자격증 발급신청 시 제출하는 '건강진단서'로 확인
>
> · 위 3., 4. 및 6.의 결격사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자격검정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e하나로민원 시스템 내 조회 및 등록기준지에 의뢰하여 파악
>
> <출처: 『2026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6면 참조>

1.1.2.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해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기준

▪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의 양성을 위해 다음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3제1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0제1항, 별표 10의3 제1호·제2호 및 보건복지부, 『2026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17면 및 18면 참조).

구분	자격기준
토지 및 건물 기준	▪ 교육기관을 운영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 필요

시설기준	강의실·사무실	▪ 최소 연면적(강의실+사무실) : 80㎡ 이상 ▪ 강의실(1인당 면적기준) 1. 전용강의실: 이론강의는 1명당 1㎡ 이상, 실기연습은 1명당 2㎡ 이상 ※ 실기연습의 경우 각 회당 교육인원이 40명을 초과할 수 없음 2. 통합강의실: 1명당 2㎡ 이상 ※ 강의실은 원칙적으로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전용교실로 운영하되,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과정 운영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교육과정에 활용할 수 있음 사무실: 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적절한 집기 및 비품을 갖춰야 함
	소방시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해야 함
	그 밖의 시설	▪ 그 밖에 시설 규모에 맞게 적절한 화장실 및 급수시설을 갖추고, 채광·환기·냉난방 시설 등 보건위생상 적절한 학습환경을 갖춰야 함
학습교구기준		▪ 인체모형, 이동식 침대(이불 및 베개 포함), 휠체어, 이동욕조, 미끄럼방지 매트, 욕창방지 매트리스, 욕창방지 방석 및 병원용 스크린: 각각 1개 이상 갖춰야 함 ▪ 기본용품(체온계, 혈압계 등), 식사지원용품(수저, 컵, 빨대 등), 이동지원용품(목발, 보행보조기 등), 응급처치용품(솜, 반창고 등), 배변용품(기저귀, 휴대용 배변기 등), 개인위생용품(목욕도구 등) 및 욕창방지용품(파우더 및 로션 등): 10명당 1세트 이상 갖춰야 함 ▪ 그 밖의 시청각 학습에 필요한 기자재

직원배치기준	교육기관의 장	1명, 별도 자격기준 없음
	교수요원(전임, 외래)	▪ 교수요원은 전임 교수요원과 외래 교수요원을 합하여 총 2명 이상(전임, 외래 각 1명 이상)이어야 하며, 다음의 자격기준 충족 필요 1.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른 교원 또는 겸임교원(명예교수, 시간강사 등을 포함함)으로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노인복지학과 및 간호학과의 과목을 교수하는 사람(해당 학과 과목 중 영어 등 교양과목은 제외) 2. 사회복지·노인복지 및 간호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업무경력(학위 취득 전 경력 포함함)이 3년 이상인 사람 ※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후 업무 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 사회복지·노인복지 및 간호 분야의 학사 학위를 받은 후 사회복지·노인복지 및 간호분야에 종사한 업무경력도 포함(다만, 노인복지·장애인복지시설과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의 경력만 인정) 3. 사회복지사 1급, 의료인, 영양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로서 해당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후 업무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로서 종사한 업무경력도 포함(다만, 노인복지·장애인복지시설과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의 경력만 인정) 4.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으로서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장기요양기관 평가 C등급 이하 또는 5년 재직경력 중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지정취소, 폐쇄명령)을 받은 기관의 기관장은 교수위원으로 지정될 수 없음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 절차

▪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3제4항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0제2항부터 제5항까지 참조).

1.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 신청: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신청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8서식, 전자문서 포함)에 사업장의 위치·시설개요 및 사업계획서(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

2. 지정신청 적합성 검토 및 적합 통지: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제출된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역별 분포와 요양보호사의 수요 등을 고려해 지정신청의 적합성을 판단하고, 적합한 경우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함

3. 지정기준의 준수 및 서류 제출: 시·도지사는 위 2.에 따른 통지를 하는 때에 해당 통지일부터 6개월 내에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기준을 갖추고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3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도록 함

   √ 법인의 정관 1부(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 현장실습기관과의 실습연계 계약서

   √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의 목록

√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도지사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함) 각 1부

√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4.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 교부: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 신청자가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때에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9서식)를 신청인에게 교부

▪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기관의 명칭·소재지 또는 기관의 장을 변경할 경우에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10서식) 및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1제1항).

▪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기관의 업무를 휴지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 휴지·폐지신고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11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1제2항).

1. 기관의 휴지 또는 폐지 의결서(법인만 해당) 1부
2. 교육 중인 교육생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폐지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정취소를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3제2항본문·제3항·제4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별표 11 제1호·제2호 5.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7. 나목 참조).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취소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중 시설기준 또는 직원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지정취소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중 학습교구기준을 위반한 경우	경고	사업정지 1개월	지정취소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않는 경우	지정취소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노인복지법」 제42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경고	사업정지 1개월	지정취소	

※ 비고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함)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각각 사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합니다.
2. 위반행위가 넷 이상이거나 입소자나 이용자에 대한 학대, 교육이수 관련 서류의 허위 작성 등 중대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위 위반기준에도 불구하고 1차 위반 시 사업 폐지 또는 지정의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3.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합니다. 이 경우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4.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양도·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양도·상속 또는 합병 전에 양도인·피상속인 또는 합병 전의 법인에게 행해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및 처분기간이 진행 중인 처분을 포함함)의 효과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의 법인이 이를 승계합니다.
5. 행정처분권자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그 처분기준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감할 수 있습니다.

√ 사업정지: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
√ 지정취소: 3개월 이상의 사업정지

▪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사업정지 또는 지정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 중인 교육생에 대한 조치 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3제2항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1제4항).

※ 그 밖에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026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22면부터 34면까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및 활동

2.1.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절차

2.1.1.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의 수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먼저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이론, 실기 및 현장실습)을 수료해야 합니다.

교육대상

▪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자격을 갖춰야 하며, 응시 전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5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1항 본문 및 보건복지부, 『2026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8면 참조).

- 대한민국 국민
- 외국인: 체류조건, 체류기한 등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적법한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

교육과정

▪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의 응시를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5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2항, 별표 10의2 제1호가목 및 『2026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8면부터 10면까지 참조).

- 표준 교육과정과 교육시간

구분	과목	교육내용	세부내용	교육시간	
				이론	실기
	요양보호와 인권	요양보호 대상자의 이해	노인과 노화 과정	2	2
			노년기 특성		
			가족관계 변화와 노인부양		
			대상자 중심 요양보호		
		노인복지와 장기요양제도	사회복지와 노인복지	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요양보호 업무		
		인권과 직업윤리	노인의 인권보호	6	6
			노인학대 예방		

	요양보호사 인권보호와 자기계발	요양보호사의 인권 보호	6	3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요양보호사의 건강 및 안전관리		
노화와 건강증진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	노인성 질환의 특성	18	3
		노화에 따른 변화와 주요 질환		
	치매, 뇌졸중, 파킨슨 질환	치매		
		뇌졸중		
		파킨슨 질환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영양		
		운동		
		수면		
		성생활		
		약물사용		
		금연과 적정 음주		
		예방 접종		
		계절별 생활안전 수칙		

이론강의(126시간)/실기연습(114시간)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의사소통과 정서지원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정서지원	8	8
			상황별 의사소통의 실제		
			여가활동 돕기		
		요양보호 기록과 업무보고	요양보호 기록	6	8
			업무보고		
			업무회의		
		신체활동 지원	식사와 영양 요양보호	6	7
			배설 요양보호	5	10
			개인위생과 환경 요양보호	5	10
			체위변경과 이동 요양보호	5	7
			안전과 감염 관련 요양보호	3	8
			복지용구 사용	1	1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일상생활 지원의 원칙	4	8
			식사준비와 영양관리		
			식품 식기 등의 위생관리		
			의복 및 침상 청결 관리		
			세탁하기		
			외출동행 및 일상업무 대행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관리		

	상황별 요양보호 기술	치매요양 보호기술	치매 대상자와 가족	10	3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 지원	11	10
			치매 대상자의 문제행동 대처		
			치매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인지활동 지원 및 관리	5	4
		임종 요양보호	임종 전 단계	3	3
			임종기 단계		
			임종대상자의 지원 및 가족 요양보호		
		응급상황 대처 및 감염관리	응급처치(골절, 질식, 경련, 화상 등)	6	7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적용		
			감염 관리		
			상황별 사례(재가, 시설, 응급)	9	6
	소계			① **126**	② **114**
현장실습(8시간)	노인요양시설 실습		통합실습 Ⅰ	40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		통합실습 Ⅱ	40	
	소계			③ **80**	
총 계(① + ② + ③)				**320**	

▪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국가자격(면허)을 소지한 사람은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이 다음과 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제1호나목 및 다목2) 참조).

▹ 간호사

구분	과목	교육내용	교육시간	
			이론	실기
이론강의(26시간) 및 실기연습(6시간)	요양보호와 인권	노인복지와 장기요양제도	7	
		인권과 직업윤리	4	2
		요양보호사 인권보호와 자기계발	4	2
		요양보호대상자의 이해	2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요양보호 기록과 업무보고	6	2
	상황별 요양보호 기술	치매 요양보호	3	
	소계		**① 26**	**② 6**
현장실습(8시간)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		**③ 8**	
총 계(① + ② + ③)			**40**	

▹ 사회복지사

구분	과목	교육내용	교육시간	
			이론	실기
이론강의(32시간) 및 실기연습(10시간)	요양보호와 인권	노인복지와 장기요양제도	4	
		인권과 직업윤리	4	
		요양보호사 인권보호와 자기계발	4	
	노화와 건강증진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	10	3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신체활동 지원	4	3
		요양보호 기록과 업무보고	2	
	상황별 요양보호 기술	치매 요양보호	3	3
		위기상황 대처 및 감염관리	1	1
	소계		**① 32**	**② 10**
현장실습(8시간)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		**③ 8**	
총 계(① + ② + ③)			**50**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구분	과목	교육내용	교육시간	
			이론	실기
이론강의(31시간) 및 실기연습(11시간)	요양보호와 인권	노인복지와 장기요양제도	7	
		인권과 직업윤리	4	2
		요양보호사 인권보호와 자기계발	4	2
		요양보호대상자의 이해	2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의사소통과 정서지원	5	
		요양보호 기록과 업무보고	6	4
	상황별 요양보호 기술	치매 요양보호	3	3
	소계		**① 31**	**② 11**
현장실습(8시간)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		**③ 8**	
총 계(① + ② + ③)			**50**	

▪ 만약,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제1호다목3)에 따른 경력인정기관(이하 “경력인정기관”이라 함)으로부터 생활지도원, 간병인 등 간병요양관련 종사자(이하 “간병요양관련 종사자”라 함)로서 경력을 인정받은 경우 또는 자격(면허)을 소지한 사람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교육시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제1호다목 및 『2026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9면 참조).

구분		감면 시간
경력자	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제1호다목3)에 따른 경력인정기관으로부터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및 간병인 등 간병요양관련 종사자로서 1년(1,200시간) 이상의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	실기 및 실습시간 각각 50% 감면
	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제1호다목3)에 따른 경력인정기관 중 노인요양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에서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및 간병인 등 간병·요양관련 종사자로서 1년(1,200시간) 이상의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제1호가목에 추가하여 종사한 시설과 관련한 현장실습 시간 전부 감면
자격(면허) 소지자	3.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제1호다목3)에 따른 경력인정기관 중 노인요양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에서 그 자격 또는 면허 소지자로서 종사해 1년(1,200시간) 이상의 경력을 인정받은 간호사·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	현장실습시간의 전부 감면

※ 교육시간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경력인정기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제1호다목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수료기준

- 교육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현장실습에서 각 교육 세부내용별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이며, 전체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제3호가목1) 참조].
- 교육생은 이론강의·실기연습 및 현장실습을 각각 80% 이상 출석하고, 위 현장실습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교육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됩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제4호가목 참조).

2.1.2.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의 응시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 및 응시방법

-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1항 본문 참조).

※ 그 밖에 요양보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결격사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요양보호사 제도 알아보기-요양보호사 제도의 이해-요양보호사 자격 요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노인복지법」 개정(2023. 7. 17. 개정, 2024. 1. 1. 시행)에 따라 표준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방법이 다음과 같이 달라졌습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5면 참조).

구분	자격시험 응시 방법
자격시험 응시방법	• 개정 후 교육과정(총 320시간)을 이수하고, 개정 후 교육과정에 따른 자격시험 응시 ※ 다만, 개정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새롭게 개정 후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응시해야 하며, 개정 후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고 자격시험에 응시해 합격하면 합격이 취소됨

응시과목

▪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4, 『2026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11면 및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라 함) 상시(기간제) 시험 홈페이지(https://www.kuksiwon.or.kr/ss/index.do)-시험안내-상시·기간제 시험정보-시험시간표 참조].

구분	시험과목	문항수	시험방법 및 형태
필기	• 요양보호론(요양보호와 인권, 노화와 건강증진,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상황별 요양보호 기술)	35문항 (1점/1문제)	객관식 5지선다 필기형
실기	• 요양보호에 관한 것	45문항 (1점/1문제)	

※ 요양보호사 시험은 컴퓨터시험(CBT) 형태로 이루어지며, 컴퓨터시험(CBT) 응시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국시원 상시(기간제) 시험 홈페이지(https://www.kuksiwon.or.kr/ss/index.do)-시험안내-상시·기간제 시험정보-응시자 유의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요양보호사 시험은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A. 요양보호사 시험은 다음의 지역별 센터에서 응시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국시원 대표번호(☎ 1544-4244)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센터	주소
서울구로 시험센터	서울시 구로구 공원로 21(구로동), 나라키움 구로복합관사 건물 3, 4층
경기성남 시험센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573(양지동), 을지대학교 성남캠퍼스 뉴밀레니엄센터 3층
부산경남 시험센터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65(용당동), 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 용당 15관 1, 2층
대전충청 시험센터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6(탄방동), 국민연금공단 서대전지사 건물 5층
대구경북 시험센터	대구광역시 동구 첨복로 80(동내동), 신약개발지원센터 건물 내 7, 8층
광주전남 시험센터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봉선동), 광주광역시 남구청 3층
전북전주 시험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13(서신동), 국민연금공단 전주지사 건물 4층
강원원주 시험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중앙로 189(학성동),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KT 학성빌딩 건물 2층
제주 시험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라대학로 38(노형동), 제주 한라대 하이테크센터 지하 1층

<출처: 국시원 상시(기간제) 시험 홈페이지(https://www.kuksiwon.or.kr/ss/index.do)-시험안내-시험센터 안내 참조>

2.1.3. 자격증 발급 및 취소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의 발급

▪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3서식(전자 문서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 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5항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9제1항 참조).

-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장이 발행한 요양보호사 교육수료 증명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4서식)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0호의2제1호다목3)에 따른 경력인정기관이 발행한 경력증명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0호의2제1호다목에 따라 실기연습시간 또는 현장실습시간을 감경 또는 면제받는 경우에만 해당)
-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간호사, 방사선사 등 일정한 자격이 있는 경우에 한정)
- 다음의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정신질환자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 3cm*4cm 규격) 1장

자격증의 재발급

-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그 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자격증의 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본인이 수료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9제3항).

  - 자격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
  - 사진 1장
  -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

자격증의 발급 등 수수료

-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하기 위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9제4항).

  - 자격증 발급 수수료: 1만원
  - 자격증 재발급 수수료: 2천원

자격증을 대여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격증 대여 등에 대한 제재

- 위 방법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면 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안 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6항).

  ※ 이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57조제2호의2 및 제39조의14제1항제5호).

- 또한,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를 알선해서도 안 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7항).

  ※ 이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복지법」 제57조제2호의3).

> Q. 실제 자격을 대여한 사실이 없고 계속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의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의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처분을 그대로 따라야 할까요?
>
> A. 아닙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제5호에서 금지하는 '요양보호사가 자격증을 대여·양도 또는 위조·변조한 경우'란 요양보호사가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이름을 사용해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행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지시한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이 자기의 이름을 사용해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하는 것을 양해 또는 허락하거나 이를 알고서 묵인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관 소속의 요양보호사로서 실제로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있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이용해 타인이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 이를 위법하게 사용하도록 허락하거나 양해 또는 묵인하는 등의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면 자격증 대여를 이유로 한 요양보호사 자격 취소처분은 위법·부당합니다.
>
>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2019-23829, 2020. 8. 18. 인용 참조>

2.2. 자격 취득 후 활동

2.2.1. 요양보호사로 일하기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고용노동부 고용24 홈페이지 등 관련 사이트에서 일자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배치시설 종류

▪ 요양보호사는 다음의 시설에 배치되어 근무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7면 참조).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 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요양/재가),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간호 제외)

일자리 정보 확인 사이트

▪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후 장기요양기관에 취업을 희망할 경우, 공공 또는 민간에서 운영 중인 구인구직 사이트 또는 기관과의 직접 연락을 통해 지원할 수 있으며, 다음의 사이트를 통해 구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사례집』, 43면 참조).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기관)	
공공	▪ 고용노동부 구인구직 포털 워크넷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사회서비스원 ▪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 어르신취업지원센터 ▪ 고용복지플러스 센터 ▪ 지역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등
민간	▪ 한국요양보호협회 ▪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활동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업무 내용

▪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가목·나목·라목·마목·제2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0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

구분		업무 내용
장기요양급여	방문요양	▪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제공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단기보호	▪ 월 9일 이내에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다만, 가족의 여행, 병원치료 등의 사유로 수급자를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회 9일 이내의 범위(연간 4회 연장 가능) 안에서 보호 가능] ※ 다만,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또는 설치 신고를 한 재가요양기관에서 단기보호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그 범위를 월 15일 이내(가족 여행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1회 15일 이내, 연간 2회 연장 가능)로 함

요양보호사에 대한 금지 행위

▪ 수급자(보호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요양보호사에게 다음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게 할 수 없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제1항 참조).

-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 방문간호 등 그 밖에 다른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책자형 생활법령 『노인복지』 콘텐츠의 <경제적 복지-장기요양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1. 요양보호사에게도 아이돌봄사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나요?

A. 네, 요양보호사는 40시간의 단축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아이돌봄사 업무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사 업무 수행을 위한 단축교육과정은 「아이돌봄사 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단축교육과정'에서 교과목 및 교육시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제7조제1항·제2항,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성평등가족부 고시, 「아이돌봄사 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단축교육과정' 참조).

Q2. 수급자의 사정으로 요양서비스 제공이 중단되었습니다. 근로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기관으로부터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A.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민법」 상의 귀책사유인 고의·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해당하는 것으로 넓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요양보호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주거지 이전, 사망 등 수급자의 사정으로 근로제공을 할 수 없었다면 사용자의 세력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수급자가 부재하여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포함)로 휴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에게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3113, 2022. 10. 5. 및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 319면 참조).

Q3. 요양보호사로 활동 중 임금체불, 근로환경, 성폭력(성희롱) 등 권리침해를 받은 경우 권리구제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요양보호사로 활동 중 임금체불, 근로환경, 성폭력(성희롱) 등 권리침해를 받은 경우 다음의 기관 등을 통해 권리구제 및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22년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 34면 및 35면 참조).

구분	담당 기관 및 업무	연락처
폭언, 폭력 등	▪ 고용노동부: 근로계약과 다른 임금 지급, 임금체불 등, 요양원 등 시설 내 직원 간 괴롭힘	☎ 1350/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1522-9000)/ www.ei.go.kr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고객센터: 방문요양·목욕 직원에 대한 이용자(보호자) 괴롭힘 신고	☎ 070-4173-3883
	▪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 부상, 질병, 장애 산재보상 신청	☎ 1588-0075/ www.kcomwel.or.kr
성희롱, 성폭력 등	▪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상담	www.moel.go.kr
	▪ 한국EAP협회: 근로자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 마음진단, 심리치료 등	☎ 1566-5228, 02-2261-0140/ www.keapa.co.kr
	▪ 성평등가족부: 여성폭력, 성폭력, 성희롱 등 채팅상담, 사이버상담	☎ 02-2100-6000, 지역번호+1366(24시간 상담)/ www.mogef.go.kr/ 카카오톡ID women 1366
	▪ 여성인권진흥원: 성희롱·성폭력 근절종합지원센터(상담, 의료, 법률지원)	☎ 02-735-7544/ www.stop.or.kr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로 성폭력·가정폭력 등 피해자 및 그 가족 대상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수사 및 심리치료 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권역별로 기관 운영
	▪ 서울시 어르신 돌봄 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서울지역 내 장기요양현장 성희롱 피해 상담 운영	☎ 1544-7315
고충상담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장기요양요원에 관한 직무교육, 건강지원, 권익보호사업, 심리상담, 노동상담 등 제공	서울시 어르신 돌봄 종사자 종합지원센터 및 지역별 장기요양지원센터

장기근속 장려금

▪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퇴사 또는 휴직 없이 계속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면 장기근속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2항제2호·제3호 참조).

구분	월별 근무시간 요건
1.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 월 120시간 이상 계속 근무한 기간이 12개월 이상
2. 직접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팀장급 요양보호사 중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7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가산 대상 종사자	
3. 직접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 월 60시간 이상 계속 근무한 기간이 12개월 이상

▪ 장기근속 장려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이 경우 사회보험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을 포함해 산정한 것으로 봄)을 위 요건을 충족하는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합니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4제6항 본문 참조).

구분	계속근무기간	지급금액
위 1. 및 2.에 해당하는 경우	12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월 50,000원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월 140,000원
	60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월 160,000원
	84개월 이상	월 180,000원
위 3.에 해당하는 경우	12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월 50,000원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월 110,000원
	60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월 130,000원
	84개월 이상	월 150,000원

※ 다만, 장기근속 장려금을 산정하는 월에 월별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않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인 경우 장기근속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4제6항 단서).

※ 그 밖에 계속근무의 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2. 가족인 요양보호사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의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후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란?

▪ "가족인 요양보호사"란 수급자의 가족이면서 요양보호사로서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제1항 참조).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급여비용 산정 기준

▪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급여비용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제2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 및 제23조 참조).

산정 기준	급여비용
1.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한 경우	▪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급여(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포함함)를 1일 60분 이상 제공하더라도 수급자 1인에 대해 방문당 25,320원(2026년 기준)을 급여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급여비용의 가산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 방문요양의 경우 1일 1회에 한해 매월 20일 범위 내에서 산정함(이 경우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종일방문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않음) ※ 가족관계를 누락하거나,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통보한 가족관계 여부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의 급여비용 산정하지 않음
2.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이 있는 경우	▪ 월 160시간 미만인 경우에만 지급 가능하고, 월 160시간 이상 종사(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은 불포함)하는 경우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음
3.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 1일당 34,120원(2026년 기준)을 월 20일을 초과하여 급여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급여비용의 가산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4.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제2호라목 ‘행동변화영역’ 중 ①, ⑧, ⑩, <18> 항목의 증상여부의 ‘예’란에 하나 이상 표시된 경우로,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5.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Q. 저는 아직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지는 못했지만, 정신장애를 가진 가족을 집에서 직접 케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요양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A. 네, 요양보호사는 아니지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가족인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단으로부터 월 240,450원(2026년 기준)의 가족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2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보건복지부 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9조 참조).

1.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제3조에서 정하는 도서·벽지지역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해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어 가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

4. 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정신장애인인 경우

5.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가족요양비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지급됩니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9조 참조).

가족요양비 지급 절차

공단에 가족요양비 지급신청

※ 위 3. 및 5.의 경우: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전까지 진단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요청

↓

지급 요건 해당 여부 확인

※ 위 4.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대상 여부 확인(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로 제출하도록 함)

↙ ↘

수급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

수급자 통보 및 매월 가족요양비 지급
(월 중에 지급 또는 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수급대상자가 아닌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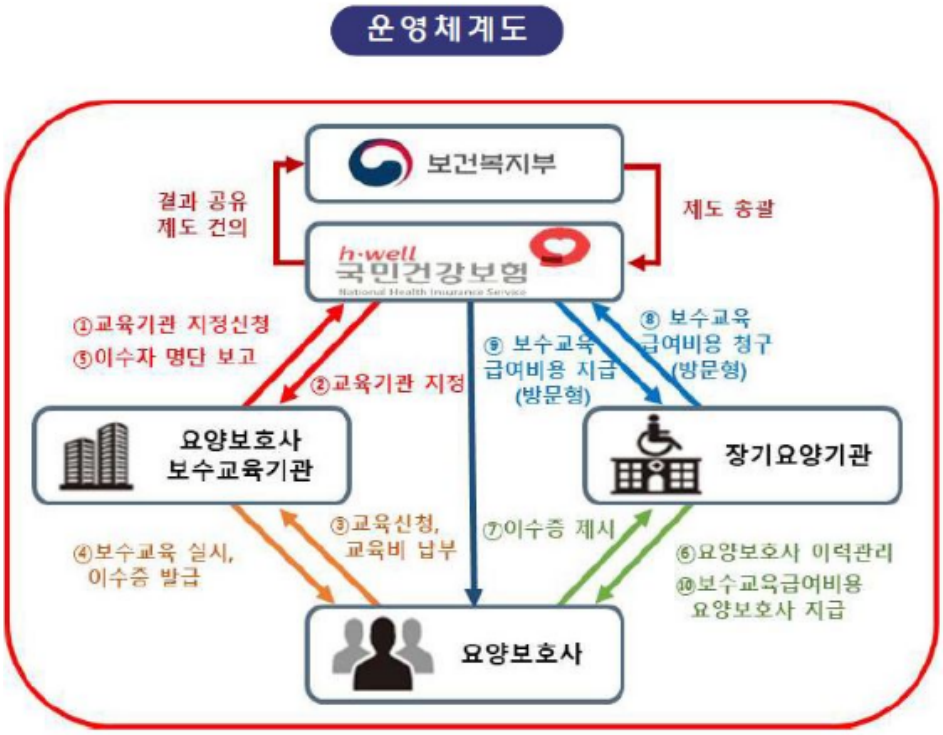
↓

장기요양 급여종류·내용 변경신청서 제출 요청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제출하도록 함)

2.2.3. 자격 취득 후 교육의 이수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요양보호사는 전문성 유지,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 등을 위해 일정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보수교육 대상 및 이수 방법



<출처: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 지침』, 3면>

▪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요양보호사는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대상 및 실시방법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2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4면부터 9면까지 및 11면 참조).

▹ 보수교육의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

▹ 보수교육의 시간: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이며, 필수영역별 2시간 이상 필수 이수(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홀수 연도 출생자는 홀수년에, 짝수 연도 출생자는 짝수년에 이수)

▹ 보수교육의 방법: 대면교육(8시간) 또는 온라인교육(4시간)+대면교육(4시간)

※ (대면) 지정받은 보수교육 실시기관 내 강의실에서 소속 강사가 현장 교육하며, 강사 출장 교육 등 지정 강의실 이외의 교육 및 미승인 강사의 교육은 인정 불가/ (온라인 교육) 지정받은 학습관리시스템(LMS)을 통해 교육하며, Zoom 등은 인정 불가

▹ 보수교육 이수방법: 다음의 방법에 따라 이수

√ 대면교육: 1일(8시간) 당일 이수가 원칙이나, 동일한 교육기관에서 4시간씩 2회 분할 가능

√ 온라인+대면 교육 병행: 교육기관 학습관리시스템(LMS)을 통해 수강 시작일부터 30일 이내 수강 권고

▹ 교육비용(교육생 전액 부담 원칙): 대면 36,000원 / 대면+온라인 30,000원(대면 4시간 18,000원+온라인 4시간 12,000원)

보수교육의 면제

▪ 위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은 다음의 경우 면제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제1항 및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4면 참조).

1.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의 합격확인 자료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최초 취득한 연도 확인)을 소속 장기요양기관 장에게 제출

2. 그 밖에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보수교육 시범운영 기간(2023. 8. 10.) 내 교육 이수자는 2024년, 2025년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 ※ 그 밖에 대면·온라인 보수교육 신청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의 내용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다음과 같이 4개의 필수영역으로 구분하며,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등에서 이수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제4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제1항,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 지침』, 5면, 6면 및 10면 참조).

- 대면교육: 필수영역별 각 2시간 이상 이수
- 온라인교육: 온라인교육은 아래 표의 필수영역 중 1. 및 2. 영역만 수강 가능하고, 나머지 3.과 4. 영역은 대면교육으로 추가 이수 필요

※ 이 경우 온라인을 먼저 수강한 후 60일 이내 대면교육 이수 권고

필수영역	강의명	시간	대면	온라인
1. 요양보호와 인권	장기요양 급여제공기준과 절차의 이해	2		
	인간중심케어의 이해	2		
	요양보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관리	2		
2. 노화와 건강증진	노인이 되면 생기는 변화와 증상	2		
	만성질환 대상자의 관리	2		
	노인 약물관리의 이해	2		
	(질병관리청) 요양보호사를 위한 감염 관리 원칙	2	×	
	(질병관리청) 장기요양기관 근무 시, 지켜야 할 감염 관리 원칙	2	×	
3.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힘뇌체조	2		×
	요양대상자의 식사지원	2		×
	요양대상자의 이동지원	2		×
	복지용구의 올바른 선택 및 사용방법(재가)	2		×
4. 상황별 요양보호 기술	치매노인과의 의사소통 기술	2		×
	위기상황 대처와 응급처치	2		×
	치매, 파킨슨, 뇌졸중의 증상	2		×
	시설의 안전 관리[감염 및 낙상예방] (시설)	2		×

급여비용의 신청

▪ 교육 이수일 당시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가정방문형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한 요양보호사는 교육이수 후 교육시간 인정에 따른 급여비용을 다음과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 지침』, 9면 및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4. 2. 14.), "요양보호사 교육 통한 전문성 강화로 장기요양서비스 질 높인다", 3면 참조).

- 산정기준: 대면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해 2년에 1회 최대 95,000원(8시간 기준) 산정
- 신청방법: 보수교육 이수 당시 근무했던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기관으로 '보수교육 이수증' 제시(복수의 기관에 근무 중인 경우 1개소에만 원본 제시)
- 청구기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이수한 달의 다다음달부터 보수교육 이수 월부터 3년 이내 까지

> **Q. 요양원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입니다. 시설형 기관(요양원 등)에 종사 중인 요양보호사는 가정방문형 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와 달리 별도의 급여비용이 지급되지 않는데요. 그럼 보수교육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에 따라 시설형 기관(요양원,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근무자의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해당 근무시간 인정은 집합교육에 한정되므로, 이러닝 교육의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가정방문형 기관(방문요양·방문목욕) 근무자는 월 기준 근무시간 적용과 무관하며, 교육 이수에 따른 별도 급여비용을 산정해 지급(2년마다 95,000원)

그 밖에 5년(60개월)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는 승급교육의 대상이 되며, 승급교육에 참여한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5년 요양보호사 승급교육 신청 절차 안내』, 7면 및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요양보호사 교육 통한 전문성 강화로 장기요양서비스 질 높인다", 3면 참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2023. 7. 17.) 이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별도의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해야 인지활동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치매전문교육의 대상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2023. 7. 17. 개정, 2024. 1. 1. 시행)에 따라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부칙(보건복지부령 제953호, 2023. 7. 17.) 제2조 참조].

▪ 다만, 2024년 1월 1일 전까지 개정 전 교육과정을 마치고 위 부칙에 따른 기간까지 시험에 응시해 합격한 사람은 '치매 대상자와 가족', '인지활동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지활동형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추가로 해당 치매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2항 및 별표 10의2 참조).

※ 개정(2023. 7. 17.) 후 320시간의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고 시험에 응시해 합격한 사람은 별도의 치매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인지활동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요양보호사 교육 통한 전문성 강화로 장기요양서비스 질 높인다", 6면 참조).

치매전문교육 신청 방법

▪ 치매전문교육의 신청은 장기요양기관 관할 지역본부별로 신청일시에 따라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5년 9차수 치매전문교육 신청 안내』, 2면 참조)

치매전문교육 방식 및 비용

▪ 치매전문교육 중 요양보호사 과정 및 비용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2025년 9차수 치매전문교육 신청 안내』, 1면 참조).

▸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총 39차시(이론 33차시+실기 6차시) + 시험 1시간으로 온라인 진행[1일 최대 10차시까지만 수강 가능]

▸ 교육비용: 20,000원(교육비는 교육생이 전액 부담)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는 승급교육을 통해 선임 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급교육의 대상

▪ "승급교육"이란 평균현원 5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에 재직 중이며, 노인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 포함)에서 60개월(월

120시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2025년 요양보호사 승급교육 신청 절차 안내』, 6면 참조)

승급교육 신청 방법

▪ 승급교육의 신청은 교육공고문 신청일자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포털을 통해 기관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2025년 요양보호사 승급교육 신청 절차 안내』, 7면 참조).

승급교육 방식 및 비용

▪ 승급교육의 방식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s://www.longtermcare.or.kr/)-알림·자료실-알림방-종사자교육-2025년 10월 요양보호사 승급교육 추가모집 공고 참조].

- 수강시간: 총 40시간(집합 16시간+온라인 24시간)
- 교육비용: 100,000원(교육비는 교육생 전액 부담)

▪ 요양보호사로서 입소자 수 25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또는 이용자 수 35명 이상인 주·야간 보호기관에서 60개월(월 120시간 이상) 이상 근무하고 공단 주관의 승급교육을 이수한 자는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6제1항).

▪ 지정된 선임 요양보호사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월 150,000원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7제1항 및 제49조제1항 참조).

- 선임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5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또는 이용자 35명 이상인 주·야간 보호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9조에 따른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 선임 요양보호사가 업무를 수행하고 그 내용을 업무수행일지에 작성·보관한 경우

3. 외국인 요양보호사 제도

3.1. 외국인 요양보호사 제도 알아보기

3.1.1. 외국인의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도 특정활동 비자(E-7)로 변경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교육 가능 대상

▪ 다음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8면 참조).

체류자격	비고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F-2) 비자 소지자	기존 가능 체류자격
2.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	
3. 결혼이민(F-6) 비자 소지자	
4. 영주(F-5) 비자 소지자	
5. 방문취업(H-2) 비자 소지자	
6. 유학(D-2) 비자 소지자	추가 대상
7. 구직(D-10) 비자 소지자 ※ 국내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에 한함(수강 전 졸업증명서 등 제출 필요)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과 특정활동(E-7) 비자변경 제도

▪ 초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특정활동(E-7) 취업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분야 취업이 허용되었습니다(법무부 보도자료, "법무부, 외국인 요양보호사 비자 최초 발급 '24, 7월, 특정활동(E-7) '요양보호사' 직종 신설 후 최초 발급", 1면 참조).

▪ 따라서 유학(D-2) 비자로 체류하거나 구직(D-10) 비자로 체류 중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노인요양시설인 장기요양기관에 취업한 외국인 유학생은 특정활동(E-7) 취업비자로 비자 변경을 신청해 최대 3년 체류와 고용계약 연장에 따라 장기적으로 체류가 가능하며, 변경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법무부 보도자료, "법무부, 외국인 요양보호사 비자 최초 발급 '24, 7월, 특정활동(E-7) '요양보호사' 직종 신설 후 최초 발급", 1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자격별 통합 안내 매뉴얼』, 232면 및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index.do)-뉴스·공지-홍보자료-미디어 자료-카드뉴스 내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사 자격취득과 E-7 비자변경 제도 안내' 카드뉴스 참조].

- 고용 비율: 국민 고용인원 대비 20% 한도 내에서 허용
- 소득요건: 해당연도 최저임금 이상
- 자격요건: 다음의 요건 모두 충족 필요

√ 학력: 국내 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

√ 자격증: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

√ 한국어 능력: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3급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 제출서류: 학위증, 요양보호사 자격증, 한국어능력 증명서류 등
- 근무업체 기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 관할 시·군·구에서 발급한 장기요양기관지정서(기관기호가 1로 시작하는 시설)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국내에 부족한 돌봄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우수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하고, 유학생 유치부터 취업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제도´를 운영하며, 총 24개 대학을 양성대학으로 최종 선정하였습니다[법무부 보도자료(2025. 8. 25.), "법무부·보건복지부, 지역 노인돌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선정 결과 발표" 참조].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선정목록(지정기간: ´25. 8. 25. ~ ´27. 12. 31.)>

체류자격	비고
서울특별시	명지전문대학교
	삼육보건대학교
부산광역시	경남정보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인천광역시	경인여자대학교
광주광역시	서영대학교
	호남대학교
울산광역시	울산과학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경기도	동남보건대학교
	서정대학교
충청북도	강동대학교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충청남도	신성대학교
	백석대학교
전북특별자치도	원광보건대학교
	군장대학교
전라남도	목포과학대학교
	청암대학교
경상북도	호산대학교
	경운대학교
경상남도	마산대학교
	창신대학교
제주도	제주관광대학교

<출처: 법무부 보도자료(2025. 8. 25).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지정 공고" 참조>